

『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‘06. 01. 11제정)이 ‘06. 07. 12.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조4항 규정에 의거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(안 제3조)
-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(안 제4조 및 제5조)
- 기반시설 부담률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)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)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부담금 산정기준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0조(예비비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
-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.